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7
--------	--------	----

제출년월일 : 1995.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집단공급사업 허가권 등이 각각의 관련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므로써 현행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부분은 삭제하고 신설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시공과 관련한 도지사의 시정명령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권을 행사토록 하고자함
- 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였던 에너지관리자및시공업에 관한 업무가 통산부와 열관리시공협회로 업무이관, 위탁('95. 7.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되어 도 위임및위탁 조례에서 관련부분 삭제 정리

☐ 주요골자

○ 가스관련부분

(삭제 정리)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와 관련된 업무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변경)허가와 관련된 업무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와 관련된 업무
- 도시가스시공자 등록 등

(신설)

- 액화석유가스 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권

○ 에너지관련부분

(삭제 정리)

- 에너지관리자 선·해임, 퇴직신고
- 에너지시공업 관리에 관한업무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제15조의4(시정명령등)
 - 제41조(권한의 위탁. 위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권한의 위탁. 위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너지관리자의 선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공업과 소관 제7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4
민간위탁 사무중 공업과 소관 제5호를 삭제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업과	7	◦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 (변경)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가.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 허가 나. 시공자에 관한 시정명령 등 다.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 제3조 동법 제15조의4 동법 제34조
	9	도시가스시공자 및 특정가스사 용시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4항
	10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권 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한 연기 및 필요 한 조치명령 라.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 지 명령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5항 동법 제58조 제6항 동법 제59조 제4항. 제5항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10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